

第267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4月12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법안심사소위원 변경의 건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6.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7.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8.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9.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10.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11.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12.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13.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14.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
1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20.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21.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22.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23. 特殊教育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2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법안심사소위원 변경의 건 4
- 의사일정 상정의 건 5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김명주·유기준·이주호·임해규·박형준·엄호성·공성진·이계경·이인기·윤두환·김영숙 의원 발의) 5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주호영·이운성·유기준·정진섭·

심재철 · 안상수 · 이해봉 · 이인기 · 신국환 의원 발의)	5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 · 황우여 · 유기준 · 이해봉 · 안상수 · 박상돈 · 신상진 · 김종률 · 이인기 · 김영숙 · 김애실 · 신중식 · 허태열 · 정문헌 의원 발의)	5
5.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 · 이영호 · 정성호 · 김동철 · 한광원 · 신학용 · 이상경 · 김영선 · 염동연 · 김재윤 의원 발의)	5
6.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 · 김영주 · 백원우 · 구노희 · 이인영 · 최재성 · 유기홍 · 조배숙 · 지병문 · 장영달 · 우원식 · 민병두 · 이미경 의원 발의)	5
7.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0)	5
8.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김명주 · 유기준 · 이주호 · 임해규 · 박형준 · 엄호성 · 공성진 · 이계경 · 윤두환 · 김영숙 의원 발의)	5
9.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우제항 · 엄호성 · 박상돈 · 이해봉 · 심재철 · 이은영 · 이종걸 · 최성 · 임종석 · 이근식 · 김재윤 의원 발의)	5
10.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 · 홍미영 · 정성호 · 권영길 · 단병호 · 노회찬 · 강기갑 · 천영세 · 이영순 · 김재홍 · 현애자 · 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1)	5
11.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권오을 · 박승환 · 정화원 · 이경재 · 이계경 · 이인기 · 고조홍 · 박찬숙 · 정병국 · 배일도 · 정의화 의원 발의)	5
12.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 · 김영주 · 백원우 · 구노희 · 이인영 · 최재성 · 유기홍 · 조배숙 · 지병문 · 우원식 · 민병두 · 이미경 의원 발의)	5
13.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엄호성 · 이영순 · 정동채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5
14.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 · 김태년 · 배일도 · 신상진 · 안상수 · 이경재 · 이성구 · 이인기 · 임해규 · 임태희 · 엄호성 · 유기준 · 정종복 · 주성영 의원 발의)	5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 · 배일도 · 윤건영 · 이성구 · 정화원 · 유기준 · 조성래 · 엄호성 · 정진섭 · 남경필 의원 발의)	5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 · 강기갑 · 권영길 · 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5
17.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현애자 · 강기갑 의원 발의)	5
1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박기춘 · 최성 · 배기선 · 임종석 · 김재윤 · 문학진 · 김현미 · 박명광 · 이계안 의원 발의)	6
19.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구노희 의원 대표발의)(구노희 · 이미경 · 김태홍 · 박병석 · 선병렬 · 이인영 · 정봉주 · 지병문 · 최순영 · 백원우 · 주승용 · 이강래 · 신기남 · 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655)	6
20.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이인기 · 엄호성 · 김재윤 · 김광원 · 이해훈 · 김태홍 · 안상수 · 신학용 · 김명주 · 심재덕 · 배일도 · 박기춘 · 신중식 · 한광원 · 박상돈 의원 발의)	6
21.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구노희 의원 대표발의)(구노희 · 이인영 · 이미경 · 백원우 · 정봉주 · 이석현 · 주승용 · 강기정 · 박상돈 · 안민석 · 김부겸 · 강창일 · 홍미영 · 노현송 · 양형일 · 이경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585)	6
22.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임태희 · 김정훈 · 황우여 · 박세환 · 이해봉 · 이계경 · 안상수 · 이성권 · 이인기 · 서병수 · 박찬숙 · 엄호성 · 진영 · 이경재 · 배일도 의원 발의)	6
23. 特殊教育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2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최순영·이은영·정성호·정봉주·김교홍·이미경·안민석·최재성·민병두·강혜숙·김영준·유기홍·김선미·이상민 의원 발의) 6
25.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정권·김영숙·신상진·안홍준·김기춘·서병수·권경석·이주호·권철현·이강두 의원 발의) 6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이재오·김교홍·이미경·정봉주·최순영·강기갑·현애자·서갑원·심상정·안홍준·임인배·임해규·김애실·안명옥·김성조·진수희·박찬숙·권경석·정종복·안경률·김양수·허친·황진하·배일도·김명주·천영세·권영길·민병두·유기홍·이균현·이영순·안민석·이원복·주호영 의원 발의) 6

(10시48분 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말씀하십시오.

○**이주호 위원** 오늘 지금 법안들이 상정되는데요, 대체토론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법안들 중에 굉장히 시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영어교육에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현재 지금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영어교육이 정말 강화되어야지, 제대로 되어야지 여러 가지 사교육 문제라든지, 조기유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법안들이 2005년 11월에 이규택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이 있고, 2006년 5월에 김기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2007년 2월에 제출되었고요, 열린우리당에서도 신학용 의원께서 2007년 3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상정도 안 되고 지금 묵혀져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알아 봤더니 정부에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국회가 정부의 시녀입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국회가 문제 제기도 못 하고 법안도 상정 못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상정은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조기에 대체토론을 하고 정부 법안이

바로 제출된다면 그것은 법안 소위에서 같이 병행 심의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교육부, 어떻습니까?

지금 이주호 위원이 지적한 관련 법안이 준비가 다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직 법안 준비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영어교육 강화 방안을 이미 만들었는데 그것을 법안으로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알겠습니다.

법안 준비가 안 됐으면 여야 간사 간 의논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라도 먼저 상정하도록 그렇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김영숙 위원**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EBS 특강을 통해서 3불정책을 방어하지 못하면 교육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교육계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언론을 통해서, 논란에 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건의 법안심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보고도 없고, 23일은 소속기관 6개 업무보고가 있고, 26일은 산하단체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불정책하고, 스쿨 업그레이트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중학생 성폭력—학교에서 여러 명에 의해서—이런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강이 있는 후에 교육부총리가 전국의 학교장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시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서 3불정책에 대한 사수 비슷하게 대국민 홍보에 지금 나서서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그야말로 분노 정도까지 오

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 왔고 또 학자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아오신 부총리께서 3불정책 사수를 바로 그냥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앞장서는 것을 볼 때 전부 다 교육 부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 비슷한 것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3불정책이라든가 스쿨 업그레이드 또 성폭력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안과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어느 날 잡아 가지고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아마 김영숙 위원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 및 소속기관 업무보고가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업무보고를 23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 가서 듣는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權哲賢** 예. 왜냐하면 지금 법안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김영숙 위원** 매일 3불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안도 26개가 중요하지만 오늘 정도에서 그것을 들어야 되지 않나,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왜 안건 조정을 못했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 논의를 하게 되면 굉장한 논란이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법안이 180개나 밀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회의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좀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기홍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유기홍 위원** 근래에 와서 의사진행발언의 본질에 어긋나는 의사진행발언이 교육위에서 요새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나라당 간사에게 의논하셔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없이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교육부 총리의 활동에 대해서 전국의 대학이 분노하고 있다는지 하는 표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좀 다른 과장된 표현이고 3불정책…… 기여입학제에서 득을 보는 대학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을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이 분노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것도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려서 말씀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은 하여간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의 본령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고 드리고 나서 내용이 좀 안 맞다 해서 중지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인들이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또 오늘 회의진행 중에 교육부총리께서 11시 반쯤에 주요 일정 때문에 잠시 자리를 차관이 대신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안이 회부된 내용들을 곧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권인오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임시국회 첫 상임위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오늘 현재 183건이나 되고 이 중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10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법, 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기타 중요 민생 법안들에 대하여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법안심사소위원 변경의 건

(10시56분)

○**委員長 權哲賢**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소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법안심사소위원을 김교홍 위원에서 정봉주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委員長 權哲賢**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24항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짜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6항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김명주·유기준·이주호·임해규·박형준·엄호성·공성진·이계경·이인기·윤두환·김영숙 의원 발의)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주호영·이윤성·유기준·정진섭·심재철·안상수·이해봉·이인기·신국환 의원 발의)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황우여·유기준·이해봉·안상수·박상돈·신상진·김종률·이인기·김영숙·김애실·신중식·허태열·정문헌 의원 발의)
5.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이영호·정성호·김동철·한광원·신학용·이상경·김영선·염동연·김재윤 의원 발의)
6.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김영주·백원우·구논회·이인영·최재성·유기홍·조배숙·지병문·장영달·우원식·민병두·이미경 의원 발의)
7.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

- 원 대표발의)(최순영·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임종인·천영세·현애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0)
8.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김명주·유기준·이주호·임해규·박형준·엄호성·공성진·이계경·윤두환·김영숙 의원 발의)
9.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우제항·엄호성·박상돈·이해봉·심재철·이은영·이종걸·최성·임종석·이근식·김재윤 의원 발의)
10.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홍미영·정성호·권영길·단병호·노회찬·강기갑·천영세·이영순·김재홍·현애자·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1)
11.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권오을·박승환·정화원·이경재·이계경·이인기·고조홍·박찬숙·정병국·배일도·정의화 의원 발의)
12.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김영주·백원우·구논회·이인영·최재성·유기홍·조배숙·지병문·우원식·민병두·이미경 의원 발의)
13.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엄호성·이영순·정동채·천영세·현애자 의원 발의)
14.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김태년·배일도·신상진·안상수·이경재·이성구·이인기·임해규·임태희·엄호성·유기준·정종복·주성영 의원 발의)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배일도·윤건영·이성구·정화원·유기준·조성래·엄호성·정진섭·남경필 의원 발의)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강기갑·권영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임종인·천영세·현애자 의원 발의)
17.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임종인·천영세·현애

자·강기갑 의원 발의)

1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박기춘·최성·배기선·임종석·김재운·문학진·김현미·박명광·이계안 의원 발의)

19.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이미경·김태홍·

박병석·선병렬·이인영·정봉주·지병문·최순영·백원우·주승용·이강래·신기남·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655)

20.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인기·엄호성·

김재운·김광원·이혜훈·김태홍·안상수·신학용·김명주·심재덕·배일도·박기춘·신중식·한광원·박상돈 의원 발의)

21.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이인영·이미경·

백원우·정봉주·이석현·주승용·강기정·박상돈·안민석·김부겸·강창일·홍미영·노현송·양형일·이경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585)

22.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임태희·김정훈·

황우여·박세환·이해봉·이계경·안상수·이성권·이인기·서병수·박찬숙·엄호성·진영·이경재·배일도 의원 발의)

23. 特殊教育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최순영·이은영·정성호·정

봉주·김교홍·이미경·안민석·최재성·민병두·강혜숙·김영춘·유기홍·김선미·이상민 의원 발의)

25.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정권·김영숙·신상진·

안홍준·김기춘·서병수·권경석·이주호·권철현·이강두 의원 발의)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이재오·김교홍·이미경·정봉주·최순영·강기갑·현애자·서갑원·심상정·안홍준·임인배·임해규·김애실·안명옥·김성조·진수희·박찬숙·권경석·정중복·안경률·김양수·허천·황진하·배일도·김명주·천영세

·권영길·민병두·유기홍·이군현·이영순·안민석·이원복·주호영 의원 발의)

(10시59분)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김기현 의원님, 안명옥 의원님, 유정복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아직 제안설명하실 의원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8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김기현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8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4항, 제15항, 제20항, 제22항은 대표발의자이신 신상진 의원님, 공성진 의원님, 안명옥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고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1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법안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신일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는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특수교육지원 대상 영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원 근거가 없어 농산어촌지역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생교육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과거 사회교육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는 학습자의 상호 지원과 연계에 있어서 업무상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재정적·행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고용과 평생학습이라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학습에 대한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그 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업무 간의 기능 조정과 역할 구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자기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학습권의 개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연계한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평생학습진흥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진흥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시·군·구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의 지원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평생학습진흥원을 설치하여 지원업무와 연구개발 업무를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교육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국립사범대학에 지원, 입학했습니다. 졸업자의 경우 교원으로 또 우선 임용되어 왔습니다.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졸업 후 교사로서 임용된다는 법규에 의해 입학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법적 경과조치의 대책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004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동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전부개정 당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중등교원으로의 채용 정원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미임용등록자 중 초등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전국 10개 교대에 특별 편입학한 850여 명에 대해서는 우선임용의 보장이나 별도의 특별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지 않아 중등교원이나 초등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미임용자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졸업 후 임용되는 법 규정에 의해 입학하였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법에서 중등교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대 특별편입 미임용등록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고 법의 제정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이번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10항, 12항, 13항, 16항, 17항, 24항은 제안설명해 주실 위원님이 나오시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 이상 19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8항에 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2제2항에서 “모든 학부모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안 제22조의3제1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제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중요한 교육정책 및 학교의 정보와 관련하여 주요한 기본적 사항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주요한 기본적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의 교육 관련 정보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각종 정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3조와 5조에서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와 개별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와 관련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강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현장에서 정의한 개념정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은 안 제17조의4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법안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안 제18조에서는 학생 징계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를 할 때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관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31조제7항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벌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봉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안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에서 “제1항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및 주기와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9조제1항에서 “교원인적자원부장관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공개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26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최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내용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현행법에서 ‘장학관·장학사’와 ‘교육연구원·교육연구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장학위원·교육연구위원’으로 하여 교육전문직의 직급체계를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이나 장학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전문직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전문직의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함으로써 관료화를 방지하고 교육 현장경험이 있는 교원의 전문직 진출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교감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교장자격에 대해서도 교사자격증소지자 중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장 자격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안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의2에서는 교장의 임용에 관하여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교장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현행 교육공무원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교과용도서 이외에 각종 학습자료의 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개별 교사의 개인적인 선호 또는 특정단체의 의도에 따라 교과용도서 외의 다양한 학습 부교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 제29조제2항에서 교과용도서 외에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적합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및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에 위배하지 아니한 도서와 그 밖의 교재로서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63조제1항에서 교과용도서 사용이 교육관계법령 또는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항, 최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안은 현행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

담한 교직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직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인 영양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양교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임용 부처의 의견은 기존의 영양교사의 양성과정은 영양교사제도 신설에 따른 단기간의 수요에 충원하기 위한 정규직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정규과정을 마친 영양교사에 한하여 이를 임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영양사를 대상으로 특별양성과정을 운영할지에 관하여는 영양교사의 수급상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제3장 및 제1절에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보 주체에게 부여된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법정 대리인인 학부모가 학생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정요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학부모 등에 대한 주체의 위임과정이 없이 학부모가 직접 학생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구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안 제17조의3을 신설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문서나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록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안 동조 제2항에서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30조의6에서도 학생 생활기록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 간의 조문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의3제2항의 경우 교육목적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등 지극히 광범위한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조직 및 전공의 설치 현황 등의 정보를 누구든지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되, 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26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둘째 이후 자녀인 유아 및 입양축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유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07년도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외에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확대 실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 있으며 참고로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논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특수교육진흥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 적용대상에 장

아성인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8호에서 장애성인교육을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령기를 지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성인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의 수료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 제27조의3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장애인교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0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4조의2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치료 및 상담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 교육장 소속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이 센터에는 특수교육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180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 교육청과 일부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7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법안은 시청각자료센터의 신설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등학교과정 교육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본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안 제15조의2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법제화할 경우 이를 추진하는데 더욱더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21조제1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문기술교육 또는 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122개의 특수학교 중 전공과를 두고 있는 특수학교는 36.8%에 해당하는 45개교에 불과한 반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 중 미취업자의 82%가 전공과에 진학하는 등 그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나치게 특수교육기관에만 치중하고 있어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고 장애영유아에 대해서 성인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장애인과 가족중심의 교육·치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특수교육지원 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고 장애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문과 관련하여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전공과 과정과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만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은 교육을 받지 않고 있던 학생들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위원회를 중앙과 시도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까지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불분명한바 이 기능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기초로 시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에 관한 배치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관할구역 내 모든 학생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배치 결정을 교육감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특수학교 교사나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행법 체계와 같이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배치하되,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특수교육 지원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일반 학급에 배치하고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설비에 관한 최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 보조기기 등의 물적 지원과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의 수단을 강구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의무조항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평생교육 실시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에 관해 관할청이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교육이 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제3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 지원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3월 6일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칙의 상한을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구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당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했던 자들 중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한 미임용자들에 대하여 중등 미임용자와 같이 공개전형 시 특별정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교대 편입 미임용자의 경우에도 중등 미임용자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정원을 특별히 할당하여 채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반면 교대 편입 미임용자의 경우 편입학 당시 특별정원과 관련된 약속이 없었으며 이러한 특별정원을 할당할 경우 초등교원 임용 정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대학 재학생들의 피해의식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의3에서는 교대 편입 미임용자의 특별정원을 총 820명으로 정하고 2007학년도에 580명, 2008년도에 200명, 2009학년도에 40명으로 할당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초등학교의 정원에 관계없이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등 특별정원 외에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증원 인원은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2년간 초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기존 교대 재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서는 개정안 제7조제1항은 입학 연도에 따라 특별정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연도 졸업생에 대하여 졸업한 연도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13항과 제14항, 제17항, 제18항, 제24항, 제25항, 이상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교육예산상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로서 응시자로부터 수수료를 납부받지 않고 수능시험을 시행하려면 대략 250억 원 정도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응시료에 대한 부담 능력이 충분한 경제적 상위계층에게도 동일하게 응시료를 일률적으로 납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상당수의 고교 재학생의 경우는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또한 각종 국가시행 시험에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응시수수료를 모두 국가 부담으로 하는 개정 방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두는 방식 보다는 정책적으로 교육예산에 반영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또는 법률에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조항'을 두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은 현재 각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대학교육당국이 발표하는 입학전형 방향과 각 대학의 입학전형 내용이 상호 달라 대학입시와 관련된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이 공고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전형 계획의 공고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공고 시점을 2년 정도 앞당겨서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공고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표하도록 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고 시점을 개정안과 같이 앞당길 경우 교육 수요자에게는 입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전략에 맞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나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공고된 이후 입시환경이 변화될 경우에도 이에 맞춰 입학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없게 된다면 학생의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전형자료의 반영비율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입학전형의 기본방향·전형유형·전형일정·행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입학전형자료의 반영비율은 나타

나 있지 않고 입학전형자료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수립하는 시행계획 단계에서 대학별로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어디에 전형자료의 반영비율을 포함시킬 것인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4조제7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반영한 것으로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째, “대학의 장은……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학의 장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법률을 통해 대학의 장을 대상으로 어떠한 특정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정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국립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입학자 선발에서 지역균형 선발제도나 인재 지역할당제 등에 준하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국립대학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둔 목적은 대학교육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기초로 작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립대학교 차원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여타 지방의 국립대학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국립대학의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제도 등을 도입하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교정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국립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균형 선발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법률상 강제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동 법안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국립대학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요 사립대학에도 각 대학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역균형 선발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은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적립금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사용토록 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 총액을 당해연도 대학교육기관의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설치한 목적이나 규모 및 사용계획이 각 대학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두어 통제한다면 대학 재정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장의 자격기준 체계를 확립하며 학원 설립자·학원 운영자 및 학원의 강사에게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원 설립자의 단체인 학원연합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에 대한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학원종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의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자와 학원의 운영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후 조항들에서 설립자와 운영자의 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구분되지 않는 학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들 학원의 경우는 학원 설립자가 학원의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학원 강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원에 학원 설립자 이외에 별도의 학원장을 두도록 강제한다면 학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학원장의 자격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학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학원장의 요건을 정한다면 전문대학 졸업 미만의 학력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을 하게 될 수 있고, 또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관계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자·운영자·강사에게 학원교육에 관한 연수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원 수가 7만여 개가 넘고, 학원강사가 20만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과, 특히 학원 강사의 경우 개인 사정 또는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해 연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하나는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유기홍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대표발의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처분권자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를 경우 위원회의 인용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처분권자가 재임용 탈락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인용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견해와 법원의 판결사례를 보면, 첫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인용하면서 동 법안의 위헌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 효력에 관해 위원회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의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교원 사이에 교원임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동 법안처럼 위원회의 결정이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기속력을 갖는다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주지방법원의 판시사항에 따르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사립학교 법인을 직접 구속하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원회의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그에 의하여 피고가 다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주지방법원의 판시내용을 들어서 위원회의 결정 이후 소송단계에서 이 법이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구제책의 하나로 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발의배경 전후를 보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처분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처분권자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일종의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은 ‘평생교육’ 대신 ‘평생학습’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학습법을 구축하려는 시도로서 평생학습의 범위를 학교교육과 자기학습까지 포함한 개인의 일생에 걸친 학습으로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와 연계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평생교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이인영 의원안과 본 법안이 중복되는 부분은 종전의 검토로 같음하기로 하고,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법이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동 법안에서 인자법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인자법과 연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의 개념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인영 의원안에서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법과 이인영 의원안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해규 의원안에서는 ‘평생학습’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을 말하며, 이에에는 학교교육에 의한 학습, 평생교육에 의한 학습 및 교수과정에 의하지 않는 자기학습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현재의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 자기학습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행하는 ‘생애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의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교육법 체제와의 혼선 내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그 하부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각각의 개별법이 고유한 규율영역을 가지고 있는 단계적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평생학습법이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 평생학습법과 학교교육 관련법의 규율영역이 중복되어 전체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당국이 학교교육에 대하여는 현행법체제에 따라 각종 추진계획·재정확보·인력운용·기타 학교교육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찾아 집행하고 있는데, 현행 개별법보다 상위법으로 평생학습법을 두어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조항을 둘 경우 교육당국은 평생학습법에 근거해서 집행할지, 현재의 개별법에 의거해서 집행할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할 경우 현행 교육 관련법체제가 평생학습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평생학습을 법률에 도입하는 효과를 확산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기학습’을 평생학습에 포함시킬 경우 평생학습의 개념이 법적 구체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즉,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행하는 학습은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평생학습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평생학습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법적으로 구체성을 상실하고 일종의 사회학적 개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자기학습을 도입하고 있을 뿐 이후의 조문에서는 자기학습의 활성화 방안이나 지원대책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규율도 하고 있지 않아 자기학습을 법률에 도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이라는 페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바처럼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평생학습법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진흥계획 및 추진체계를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연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의 취지는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의 범부처 간 협의체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함으로써 종전에 지적되었던 평생교육 관련정책이 부처 간에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

진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 제10조와 같이 기본계획이 국민의 평생학습에 관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생학습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일부로 수립될 경우 평생학습의 다양한 영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이 인자법상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일부로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 인자법상의 부분계획으로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 따르면 평생교육 업무가 시·도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어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인영 의원안이나 임해규 의원안 모두 현행 평생교육법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각 추진체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면,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인영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반해 임해규 의원안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평생학습진흥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안은 인자법과의 통합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인자법이 국민 전체에 걸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하나로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자법상의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구성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진흥특별위원회는 평생학습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되는 데 반해서 인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별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최고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둘 것인가 아니면 평생학습이라는 영역에서 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평생학습을 진흥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구로서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인영 의원안은 광역지자체에 지역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임해규 의원안에서는 시·도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고 동기가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능과 관련하여 이인영 의원안에서는 해당지역의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임해규 의원안에서는 이인영 의원안보다 확대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인영 의원안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으로 연구·개발·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임해규 의원안에서는 평생학습진흥원이 평생학습 관련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연구·개발 기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지원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분리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평생학습법의 발의 취지가 국가 전체적인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시간입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 간부 이동이 있어서 편의상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유장수 부총리 정책보좌관입니다.

(간부 인사)

유장수 정책보좌관은 부산 부경대 교수이십니다. 지방대 교수를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산 출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유정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정복 의원님의 개정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를 하고 꼭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 성폭력 사고들이 여전히 빈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연간 10시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차관님?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춘 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수까지 정해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면서 양상도 훨씬 더 나쁜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요. 도저히 이것이 딸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고 있고, 또 가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대로 평생 신세를 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렇습니다.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여기에는 성교육의 내실화 문제, 효율화 문제 이런 것이 있고 사람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도교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과편성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성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해서 학교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 담당교사가 성교육 직무연수를 제대로 이수하고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봐도 직무연수 심화과정까지 제대로 이수한 학교가 한 1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담당 전문교과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나 시간 부족 이런 여러 등등으로 해서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나 각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우선 책임을 지고 어떤 후속 대책을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세워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고들을 보면 주로 가해학생,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이라는 시기는 아시겠지만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아주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성폭력이라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면 과연 이런 사고들이 빈발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부 보고에 의하면 교육부가 지침으로 요구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10시간 동안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99.7%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시간도 평균 9.8시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나마 10시간도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하는 학교들은 2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위한, 보고를 위한 서류 작성으로는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판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학교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예산도 또 제도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고 본 위원도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범주에 성폭력을 포함시키자라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 지금 이 성폭력은 별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법에 이것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것을 저어해 온 그런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대책이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폭력 대책법에 성폭력을 아주 주요한 범죄로 넣어서 학교폭력 전체에 이 성폭력 대책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대책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의 부실화·형식화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교사들이나 성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구제하는 센터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방식이 대부분 재량학습시간을 이용해서하라 이렇게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과정 안에 학교도 임의로 판단할 수 없게끔, 임의로 운영할 수 없게끔 교과과정 안에서 엄밀하게 교육 시행을 의무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시간이라도 제대로 수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집중이수제의 도입 이런 것도 요구하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독립 과목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요. 일반 여러 교과 안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성폭력 사건이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폭력대책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 무슨 재량학습시간에도 하고 가정시간, 체육시간, 과학시간 이런 데 흩어져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커리큘럼을, 10시간짜리 커리큘럼을 엄밀하게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것은 이 시간에 이 내용 가지고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고, 성폭력이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교사가 의무적으로 지도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엄밀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커리큘럼을 교과과정 안에서 소화하게 하고요. 그것의 이행 여부를 엄밀히 감독하고 보고하게 하고 점검하는 그런 장치가 최소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교육부 안에 학교폭력대책팀도 있고 하니까 그 팀 차원을 뛰어넘는 교육부총리와 차관이 직접 이 문제를 주관하고 주재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그 보고 좀 따로 한번 챙겨서 꼭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장관님이 안 계신데요, 장관님께 꼭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지금 차관님께 여기에서 질의하면서 장관님 답변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관계로, 9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이론과 경륜과 그다음에 실천을 겸비한 사람이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전문가로 볼 수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교장 자격증을 지금 주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또 교직원을 통할하면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를 들여다보면 20대부터 50대 또 62세 정년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선후배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교장자격증 없이 교사자격증만 가지고도 5년 이상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교장을 이제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교감의 자격기준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가 안 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장공모제의 다른 형태를 지금 시범 적용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통계를 보면 2006년,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교직 경력 5년 이상 자격을 가진 교사가 한 25만 2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한 2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5년 이상 교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되려고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만 되면 이제 교장이 될 수가 있어서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장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전에는 절차, 경력이 일정하게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이렇게 각종 거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분들도 사실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선출되기 위해서 학교현장이 선거관으로 그렇게 전략하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육에도 손실이 있을 것이

고 학부모가 또 학교를 들여다 볼 때 이것이 선거하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 보면…… 만 4년마다 한다고 해요, 지금 4년 임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짚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교장승진제의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이 되는 경로를 좀더 다양화하고 개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급속하게 또 일시에 다양화·개방화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부 시범적인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화·개방화할지는 좀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학교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가지고도 대단히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나, 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보나, 학생을 인간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학교 안에 선후배가 존재를 하고, 일정의 룰도 있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선배한테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론이야 대학에서 다들 똑같이 공존하면서 배우지요. 나와서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암암리에 잠재적 교육과정, 거기 안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교감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학도 보면 조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또 부총장이 있고 그다음에 총장 외에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장 아래 보면 부장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감이 중간관리층으로서 지금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감 역할이. 심지어 화장실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중간역할을 선생님들의 애로 사항, 그것을 교장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감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교장과 교사, 딱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이 교단 현상이 굉장히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립을 조정해 줄 중간관리층 이것도 없고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교감제 폐지에 대해서 교단의 안정화를 결여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도 교감직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에 보면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직위가 있지요,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붙여준 이름이 아니지요. 그냥 붙여준 직위가 아닙니다. 장학사의 역할, 장학관의 역할 또 교육연구관의 역할, 교육연구사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선 교육행정청, 16개 시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현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폐지가 돼 가지고 장학위원 또 연구위원으로 이 직급을 단일화한다는 법입니다. 이것은 정봉주 의원 법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을 그야말로 획일화하면서 가볍게, 소홀히, 단순히 이렇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장학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계층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이은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위원들과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긴급 연대회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로스쿨법이 4월 국회 내에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권철현 교육위원장님실도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만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4월 국회를 시한으로 지금 2009년도 3월 로스쿨 개학이 4월 국회에 처리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요즘 일주일째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진작에 법안소위에서 거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위원회에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고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일정 시한 내에 전체회의로 보내지 않는다면 전체회의에서 그것을 다시 직권으로 토의해서 매듭을 짓고, 지금 특히 FTA와 관련해서 법률시장 개방으로 우리 법률서비스의 취약성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 이 로스쿨법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여기에 많은 부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 법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추세를 봤는데 그중에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을 보면 거기에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주입되거나 어떤 교육내용을 이것이 좋으니까 꼭 섭취하라고, 좋은 뜻에서 나온 강요입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내용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에게 권장하고 싶은 교육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자면 이 개정법률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어디로부터 그 정보를 받을 것이냐, 물론 학교로부터 성적표나 학생생활기록부의 사본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더 광범위한 교육정보이고 이 교육정보는 공교육에 관한 것뿐 아니라 사교육에 관한 교육정보 또는 해외교육에 관한 정보, 영어연수 등과 관련된 정보 이렇게 종합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학부모상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진작부터 저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교육정책으로 착수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다른 법안에

서도 이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정책 착수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정보 또는 상담센터에서 다룰 영역,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정보나 해외유학정보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께서 성폭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관련 기관의 다수의견이 성폭력을 학교폭력대책의 범주 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 대책반의 한 명인데요. 저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거나 저의 딸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더라도 아들의 경우에는 학교 보내는 학부모 마음이 가서 얻어맞고, 소위 말하는 주먹으로 폭력을 당할까 봐 우려되는데 딸의 경우에는 실은 학교에서 주먹으로 얻어맞고 오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과 관련한 희롱이나 추행, 폭력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폭력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남학생만을 학교에서 보호하고 여학생들과 관련된 학교폭력사태는 그냥 관심 밖으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남학생 위주의 교육사고방식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학교폭력대책의 책임을 추궁한다기보다 그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과 관련된 폭력도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아까 상담센터와 관련해서도 경찰이나 이런 데 성폭력상담센터가 있습니까. 다마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그냥 뭐랄까 완전 강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가벼운 추행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는 것이 주위에 보기에 꺼려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것이 발견되는 것은 마치 처녀가 산부인과 출입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남들에게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

에 학생이나 학부모상담센터가 종합적으로 생기면 거기에서 남들이 보기에든 진학상담을 하는 듯하면서 문제를 전문 성폭력 상담선생님께 연결해 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학교 내의 성폭력 문화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수요,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시겠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오늘 올라온 법 중에 개인 교육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제가 조항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의 경우에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정보는 외부에 노출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한 때에는 대학입시를 위해서 내신성적을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공적인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고요. 그것을 법에 위반해서 노출한 경우에 처벌 등의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교육부는 어떤지 몰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요.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앞으로의 학교 등급이랄까 학교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학원의설립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 있어서는 이런 게 뭐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다마스 지금 많은 학부모나 학생의 경우에 공교육에 보내는 시간에 못지않게 학원에 보내는 시간도 많거든요. 학교에 8시간 가 있고 학원에 4시간, 심한 경우에는 학원에 8시간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에도 학부모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두고 학원강사들이 제대로의 기준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저는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대를 받는 학원의 경우에는 공교육에 준하는 그런 강사들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넓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자질을 높이는 일 또는 사교육의 부당한 가격을 좀 적절한 가격으로 낮추고 지금 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해외연수 알선이나 유학 알선 같은 것을 학원선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의시간 이외에 장삿속으로 알선도 굉장히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사설학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학생학원과 성인학원을 분리를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학생학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관찰시키겠다는 교육부안에 대한 반대견해를 나타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성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매우 논의의 여지가 많습시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입시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성적이나 또는 학교에서의 행동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학도 공교육이고 공교육의 연장선에서 있는 이상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에 대한 평가이고 또 학생들이 정규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정도로 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과정의 결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내신 반영을 50%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히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여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대해서 차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낮은 편인 것은 다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최순영 위원**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최순영 위원** 이렇게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첫째가 재정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별학생들의 장애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재정에 제일 큰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불 명확하게 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사실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예산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인정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애 학부모들은 특수교육이 나아지는 것에 대한 사실보다는 어렵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육예산이 지역마다 많고 적고 들쭉날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그 농성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고 이 편차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교부금을 총액으로 시도에 시달하고 예산편성지침도 내려보내지 않도록 교육이 자치에 맡겨짐으로써 구체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교육감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과밀인 것은 잘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최순영 위원** 그래서 특수교사가 대폭 증원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교원 증원 요청할 때는 특히 어려운 이런 특수교육 쪽이나 이쪽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본격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병합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최순영 위원** 이것이 4월 임시국회에는 꼭 본회의까지 가서 의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거의 20일 가까이 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차관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는 직접 못 갔고요.

○**최순영 위원** 교육부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니라 책임을 좀 느끼시고 좀 한번 찾아가서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상임위에서 또 많은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증원과 그다음에 치료서비스, 그다음에 교육지원서비스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그다음에 직업교육 개선, 장애인 고등교육·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재정의 증액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고 꼭 좀 이번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제가 낸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사립대학의 적립금 상환의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등록금을 계속 인상하는 데에 큰 요인이 되고요.

사립대학의 적립현황을 보면 2005년도 사립대학 전체 적립금 중에서 건축적립금이 42.7%입니다. 그리고 기타 적립금이 40.8%고요. 이에 비해서 영구적립금은 8.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학적립금이 6.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립대학이 자기네 대학의 몸짓 부풀리기에 사용되는 걸로 적립금이 거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이 특정목적이 부가된 적립금에 있어서 적립금을 교육환경에 투자를 못 하게 하는 입장인데 외부인이 특정목적을 부가하면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의 경우에도 학교 차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렇게 목적성 적립금과 비목적성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적립금 비율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45.9%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의 일부가 정해져 있고 목적 없이 적립되는 부분들이 십칠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감가상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해마다 낡아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분에 상당하는 적립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최순영 위원** 목적성·비목적성 적립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재학생들한테는 인상률이 낮고 그래서 등록금이 사실 더욱더 올라가고 신입생들은 등록금을 내야만 등록을 하게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래서 저희가 등록금예고제를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전, 더 좀 바람직한 것은 중기적으로도 예고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알고 입학할 수 있도록……

○**최순영 위원** 등록금예고제가 등록금 관련 분규를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등록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높은 등록금을 받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생의 경우에는 아무리 등록금이 높고 사전예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사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상한선을 법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경우에 기성회비를 수업료보다 더 많이 받아서 보조적인 의미보다는 기성회비가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기성회비의 원래의 목적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성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수업료만 내겠다고 하더라도 기성회비의 원 취지로 하면 학생들의 등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원 취지대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의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이 사실 동의를 받는다 하지만 지금 거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지요.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신입생들한테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기성회비는 이런 부분에 쓰여지기 때문에 안 내도 등록이 된다는가 이런 것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고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수업료 납부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현재 법대로라면 법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기에는 지켜야 되겠고 이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1년 내내 계속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문제도 생겼고 투쟁도 했고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등록금의 책정에서 학생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그러기 위해서 법안을 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인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사실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대개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평생 교육학계를 이끌어 오신 전문가이신데요.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평생학습사회라고 불릴 만큼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우선 그 추진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시행을 이끌어 갈 기관이 지금 존재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독자적인 기관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어서 평생교육 분야가 주도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우선 첫째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주호 위원** 저도 대체적인 동감을 합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총괄 기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통

합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교 이외에, 학교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이 의미가 있으려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스쿨 투 워크(school to work) 또 워크 투 스쿨(work to school)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도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직장에 있다가도 학교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직장과 학교를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는 그런 체제의 구축이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해서 노동부에 그 기능이 있고, 또 중앙차원에서 보면 직업능력개발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능력개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국은 평생학습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평생학습이랑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업능력과 관련된 이런 학습이 빠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려 보면, 고용보험 적립금이 한 8~9조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주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문대학이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평생학습을 하는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업보험이 아니고 고용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사회를 선진국이 다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생고용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고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평생직장이 아니고, 직장은 여러 번 바뀌더라도 계속 학습을 해 가면서 적응능력을 키워서 계속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직업능력개발 부분이 지금 평생학습과 분리되어 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기획도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임해규 의원의 법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만 평생학습진흥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개발원이 있고, 또 직업능력개발원이 있는데 제3의 평생학습진흥원이 또 생긴다면 그야말로 지금의 분리된 체제를 더욱더 분화시키고 통합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진흥원을 만들려면 직업능력개발원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평생학습진흥원 체제로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주호 위원께서 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중요한 제안도 하시고 하는 것을 항상 존경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능력과 한 개인으로서의 능력, 또 시민으로서의 역량 이것이 각각일 수가 없겠지요.

○이주호 위원 맞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도 우리가 한 개인과 한 사회의 조직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직업적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시민의식, 시민능력 이것이 또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아실현 즉 교양이랄지, 말하자면 이렇게 3개가 평생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세 축 아니겠습니까?

○이주호 위원 예, 맞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이상스럽게 직업교육하는 분들은 대체로 평생교육을 “너희들은 무슨 교양이나 꽃꽂이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주호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또 평생이쪽 분들은 저쪽 직업교육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사람을 꼭 직업적인 존재로만 본다” 서로 이렇게 대화가 좀 안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체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개발원이 주로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체제에 대한 R&D기관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속에 직업교육도 있었다가 점점 인적자원이 중요한 분야가 되고 직업교육이 커지면서 말하자면 교육개발원으로부터 직

업능력에 관한 이런 부분이 독립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국가 수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주로 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육은 교육개발원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직업교육과 인적자원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 또 개발 이런 것은 직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은 국가 수준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수준으로 가서 정말로 한 개인의 삶이 직업인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주호 위원 좀 줄여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별도의 진흥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주호 위원 그래서 사실 그 직업능력……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로컬 레벨에, 시·군·구 레벨에는 평생학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도 레벨은 지금은 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게 있는데, 국가 수준에서는 오히려 민간 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말에 동의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시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개념이 고안됐지만 오히려 인적자원개발의 또 다른 어떤 영역이 구축이 되는 듯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다시 평생학습까지도 이렇게 중앙 차원에서 분리된 기구가 만들어지면 정말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이 계속 생기고 영역 다툼만 일어나고…… 현장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똑같이 통합되어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인데 서로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평생학습진흥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획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만들려면 차제에 정말 평생학습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능력개발원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 그렇게 해서 정말 통합적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이 정말 잘되는 북구나 이런 유럽 나라들의 모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것을 별도로 한다면 오히려 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도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저는 부총리께서 이번 재임기간 동안 평생학습체계를 잘 구축해 놓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적임자시고요.

저는 임해규 의원의 법안을 보면 지역 차원에서 통합은 어느 정도 법안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잘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 차원은 물론 지금 부서에 노동부에 있는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한쪽 축은 교육개발원이 맡고 한쪽 축은 평생학습진흥원이 맡아서 직능원을 차제에 이번에 평생학습진흥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좀 철저히 고민하시고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하셔야지 사실은 업적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법안소위 심의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것도 알고 또 기본 방향에 대해서 물론 공감합니다.

다만 역시 교육개발원과 직업능력개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는 그 기능으로 이미 정착이 돼 있고 평생학습진흥원은 평생학습의 시행을 하는 기관이고, 게다가 이 기관은 교육개발원과 직능원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개발원도 있고 또 여성개발원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전부 지역사회 수준에 가면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관계된 것이어서 이것은 오히려 그런 여러 기관의 정책 연구하고 전문 뭐 하고 하는 것들의 시행을 위한 것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하부 단계의 평생교육원들을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호 위원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이것은 옥상옥이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호 위원 옥상옥입니다, 옥상옥이고요.

왜냐하면 직업능력개발원을 만들 때도 기억하 실지 모르겠지만 실행 기능만 주려고 했던 겁니 다. 그런데 그 기구가 연구 기능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고요.

평생학습원도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은 또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하시라는 겁니 다. 통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개악이 된다는 제 지적을 꼼꼼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검토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안에서 도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5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상정됐고, 특히 정부 안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된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건이 제출됐지만 정부가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본회 의원님이 낸 2개 안, 김우남 의원님이 내신 안, 나경원 의원님이 내신 안 해서 이 4개의 안을 사실상 지금 정부의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속에 포괄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 습니다.

○유기홍 위원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해서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성인 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대 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어찌 보면 정말 정부안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까지 를 포함하고 있고 이 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점도 몇 가지 있

어서 이 안의 기본취지에 공감하지만 좀 우려되 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관련인데요.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려면 장애유아를 먼저 선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무교육대상자명부를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선 장애유아들의 교육수혜율이 전체적으로 낮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취원이 현실 적으로 낮아서 의무교육 요구가 대단히 높은 건 사실인데요.

장애유아를 의무교육대상자로 고정시키는 사례 가 해외에 있습니까?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장 애유아를 유아 때부터 의무교육하는 사례가 있는 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해외에 이런 사례 가 있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저희 당 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 교육정책과장 이석진 특수교육정책과장 답변드 리겠습니다.

대개는 만 5세부터 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 리고 4세에 일부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점에서는 가장 앞선 나라가 되는 셈인 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 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입학 거부나 교육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 부가 조치하고 무상교육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적합하지 의무교육으로 무조건 편입시키는 게 조 금 무리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 교육정책과장 이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 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 치원 과정의 교육수혜율이 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좀더 적극성을 띠고 대신해서, 학 부모의 자녀취학 의무는 좀 선택적으로 가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

을 정부가 수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유기홍 위원** 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단식도 해 오시고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분들과 또 간담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의 학부모 중에는 정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자녀의 장애 판별 여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육지원을 원하는 학부모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교육비 등을 지원해 줘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것을 의무교육으로 강제하는 게 맞는가? 모든 학부모가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저희 교육부 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의무제도는 말하자면 학습자 학부모에게 의무취학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애인부모 가운데는 자녀를 의무적으로 취학시키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와 줘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 문제들 저희들이 제기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해 주어야 정부가, 국가가 예외 없이 원하는 사람을 다 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국가의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무상을 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히 그 뜻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의무까지 할 것은 없고…… 의무로 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해서 사실 개념상으로는 조금 잘못 사용된 면이 있지만 여하튼 장애인들이 원하는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뜻을 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원치 않는 장애인도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유아교육을 받도록 국가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이것은 되지 않도록 아마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이 법안 자체에 선택권은 오히려 정확한 규정이 없고 처벌 규정은 정해져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의무취학을 안 시켰을 경우 처벌 규정 말씀입니까?

○**유기홍 위원** 예, 그러니까……

우선 또 한 가지 여쭙 볼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판별을 어느 기관에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판별도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러한 것은 지금도 특수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 기관에서 만든 여러 가지 판별법 이런 것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갈 것이고 또 시도교육청에 이런 판별하는 전문가들을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법의 뜻이 원치 않는 장애유아를, 원치 않는 유아를 강제적으로 유치원에 취원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은 좌우간 그들이 원하면 다 시켜주라고 하는, 이렇게 원해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글썄요,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유아로 진단됐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발달의 희망이 보이거나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시키고 싶어할 경우 학부모의 선택권에 대한 규정이 우선 명확하지 않고요. 이를 위반할 시 묻는 학부모에 대한 책임, 보호자로서의 의무위반 시 처벌하게끔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총리께 설명하신 부분하고 실제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오히려 이것을 자꾸 설명을 하면 마치 정부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처럼 그쪽에서 받아들이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과도하게 표현된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에게 거꾸로 이것이 새로운 제약이 되는 것은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으로 판별이 된다고 해도 꼭 분리교육은 아니고 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

금은 통합교육이 기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반 어린이들과 함께,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교육은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이것 담당자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 보겠는데요. 정부안 제49조에요. 장애아동의 입증책임은 부모에게 두지 않았습니까? 재심청구할 때 ‘그렇다, 아니다’ 하는 입증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정부안에는 제49조가 없습니다.

○유기홍 위원 49조가 없어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예.

○유기홍 위원 아, 이것은 최순영 의원님 법안하고 착각을 한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쭙어 보겠는데요.

보육시설 유치원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선정하는 문제 관련해서요. 정부안 제19조에 ‘만 3세부터 만 5세의 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즉 보육시설을 의무교육기관으로 교육부가 인정한다는 것인데 보육시설을 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한 적이 이제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관계된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예,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유기홍 위원 어디하고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여성가족부하고요.

○유기홍 위원 아니, 우리 정부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유·불리가 발생하는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학부모님들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나눈 것은 아닌데 몇몇 학부모님들과는 의견을 나눈 결과입니다.

○유기홍 위원 유치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

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예, 유치원하고……

○유기홍 위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의 관계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인정을 하도록 한 이유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육시설에 가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보육시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요. 일단 하여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 획을 긋는 것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어찌보면 최대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부족이나, 사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점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가 평생학습법으로 제목도 바꾸는 전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이 법을 이렇게 내게 된 취지나 불가피성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제가 대표발의를 한 저 스스로 보기에 국민 학습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선언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의 내용하고, 또 사실상 사회교육법으로서의 평생교육법의 성격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놓음으로 해서 갖는 법체계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가 발의를 했지만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은 그간에 평생교육법이 사실상의 사회교육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능이었고 그렇지만 국민의 학습권에 대한 요구는, 현상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요구는 또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담을 만한 지금 법적 틀이 없다고 하는 점이 또 하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례로 얼마 전에 사이버대학을 원격교육 형태로 하면서 고등교육법으로 가져가고자 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 학습권이 나타날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를 기왕의 제도나 틀로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이 갖는 폐해나 제한성이나 이런 점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면 EBS 수능방송에 대한 비판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생기면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민간 업체, 시장을 점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평생교육법으로 그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또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바라보건대 도대체가 평생교육법으로 그 업체가 영리활동 즉 교육산업의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것이 어떤 위법행위 혹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학습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 걸맞은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이 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오늘날 굉장히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제도로는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교육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어쩌면 보호하고 진흥하고 북돋는 이런 법적인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생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권에 관한 규정과 다양한 학습형태를 조장하고 허용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할 부분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법의 문제의식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평생학습법이 얼마나 포괄적이어야 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으로는 평생학습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제 정책과 사업의 실체는 여전히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져 와서 평생학습은 전체 학습을 뭐 교육을 다 포괄한다고 하면서도—개념적으로는—그러나 실제로 법이나 제도는 여전히 학교교육은 학교교육 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 쪽이 말씀하신 사회교육은 사회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서, 그러나 이름은 사회교육이니 성

인교육이니 하는 것으로부터 자꾸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학교교육과 과거에 사회교육의 벽을 헐고 상호간에 교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고요. 그런 점에서 개념의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사이버…… 아직 그렇게……

○임해규 위원 그것은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인적자원법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그 점은 법안을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아마 교육부의 의견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 점을 한번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학습비를 어떻게 그 학습자에게 지원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학습비에 대한 가장 큰 제도는 고용보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은 지금 10조가 넘는 돈이 운용이 되고 있고 그중에 많은 돈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점이 주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평생학습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점차 직업교육, 혹은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성인교육 혹은 평생학습의 주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인적자원부라는 것도 그것을 용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부가 인적자원부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또 그런 의사가 진정 있다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가장 핵심 자원인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고용보험 활용을 어떻게 인적자원 차원에서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단순히 재직근로자나 일시 실업자 혹은 그런 일시 실업자에 대한 구제 수준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까지 그것을 넓혀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학습권의 실제적 보장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인적자원부에서 노동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국민의 학습권 보장의 제도로써 확대·개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이것을 어젠다로서 연구하고 또 그렇게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확대, 그것을 위해서 실업자들을 위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로 노동부가 관장해 오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노동부는 노동부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 교육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부 기관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교육부는 많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노동부하고도 지금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꼭 실업 상태인 사람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교육은, 특히 실업교육 부문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실업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임해규 위원 취지에 공감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과 관련해서 이 법을 소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 제안을 제가 해 볼 생각인데 법으로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는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우선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그간에 연구를 해 온 것이 직능원 그리고 교육개발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자료를 죽 보니까 주로 노동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직능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개발원에서도 관심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물론 인적자원부의 주도하에 그렇게 해서 실제 과제로, 저는 혁신위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이 되었든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고 그런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런데 이것은 텔리키트한 부분이 되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 알고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부처 간에 자기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협조하자는 것은 법안에 선언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그쪽 고용보험을 이쪽 평생교육법에서 어떻게 활용하자든지 이렇게 되면 청소년법에 관계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야 될. 또 여가부에서 하는 여성에 관한 교육들도 사실 많이 지역 차원에 내려가면 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다른 부처에 관계된 사업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아까 평생학습 얘기하셨다시피 선언적으로 하고 그런 데와 협력하는, 이런 선언적인 안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여기에 담을까 어떻게 할까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긴 논쟁과 불필요한 부처 간에 갈등을……

○임해규 위원 부총리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질의의 요지는 전혀 그게 아니었고. 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법에는 못하겠지요. 법에다 그것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고용보험 기금이나 이런 것이 주요한 하나의 재원이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차원에서 그것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한다면—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그러면 그것을 좀 연구도 하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국책 3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드린 질의 내용이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지금 곧 발족하게 되어 있는 인적자원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인적자원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거기에서 조정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평생교육법에서, 학습법에서 규정하게 될 고용보험이랄지 이런 것들도 그 속에서 논의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계속 하시지요. 보충질의까지 하십시오.

○**임해규 위원** 저는 각 연구기관에서 한 것을 제가 최근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그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연구원, 직능원에서 한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다 봤어요. 최근에 다 읽어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즉 재직자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몇 개의 연구서에 선언적으로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정책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분명한,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발주의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하나의 제안이라면—여러 아이디어 중에—그리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학문적인 논의 많이 하지만 그 관련된 논의의 귀결점은 국민들에게 학습권을 주려면 우선 직업능력훈련이 첫째 오늘날 학습의 주요한 테마일 수밖에 없고, 다른 많은 것을 물론 해야 하지만 주요한 테마라는 점, 그러면 그것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하는 점, 그래야지 학습권이 실현이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자원은 바로 고용보험에 있다고 하는 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국민 전체가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재원을 모집하는 방법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겠지요. 지금과 같은 그런 보험의 성격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의식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평생학습이 말 그대로의 평생학습이 되고 캠페인 중심의, 혹은 취미교양 중심의 그런 평생학습으로 전략하지 않고 한 단계 거듭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조속히 그런 명백한 제도와 정책과 법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연구가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의지가 있으시다 하면 저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좌우간 지금 그래서 고용보험, 그 밖에 다른 재원을 확보하고 부처 간에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연구를 더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김영숙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모법이 계류되고 난 다음에 모법에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시행령에서 모법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퇴색되었기 때문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2일자로 본 위원이 학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 제6조제2항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또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3월 22일 정부가 공포한 학원법 대통령령에서는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이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법의 입법에 대한 취지랄까 이것이 퇴색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법 해석을 교묘히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 취지가 훼손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학원법 제6조제2항에 기숙학원 등록 시에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토록 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숙학원 난립을 막자는 뜻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고, 이게 바로 또 공교육의 근간을 흐트리지 않고 공교육을 잘 유지 육성하자는 그 뜻 아닙니까?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과도하게 학원이 난립을 하다 보면 또 사교육시장으로, 그것이 학교교육이 아닌 사교육, 기숙학원이나 이런 데 또 본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가 생기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데도 또 취지의 성격

이 있다 이렇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시행령이 법의 제6조의 취지에 혹시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점을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숙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여건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것을 살펴봤는데 저는 또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교육여건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어떤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영숙 위원 예. 왜 그것을 제외시켰는지, 제한하는 거를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제가 거기까지는 못챙겼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을 살펴봐 주십시오. 묘하게 그것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만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설립요건만 갖추어서 허가를 낸다 이러면 설립요건이야 다 갖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가장 왕성하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라고 칩시다. 일정하게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있고 이런 물리적으로 갖춰야 될 건 다 갖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을 안 두면 요건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요. 그것이 주범이 돼 가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공교육의, 학교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는 얘가지요. 그런 뜻에서 지역여건은 꼭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설립을 그냥 마구 허용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는 편에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법에, 또 교육여건을 참작해서 해야 필요성에도 맞는 것이고.

○김영숙 위원 난립은 막아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혹시라도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일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문맥을 모법의 취지를 살려서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난번에 기숙학원들이 너무 난립을 하고 사전에 학생을 모집하고 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또 혹시 화재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데 사고가 날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한다’ 이 말은 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마구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런 모법의 정신이 시행령이나 조례에 어긋나 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찾으셔서 가지고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委員長 權哲賢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유기홍 위원 한 가지만 제가……

○委員長 權哲賢 예.

○유기홍 위원 간단한 건데요.

장애인 교육 지원 관련 최순영 의원님 법안의 경우 지금 예산 추계를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과장이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3조 3600만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한 해에?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5년 동안에.

○유기홍 위원 5년 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기홍 위원 정부안은?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정부안은 3년을 잡았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것도 5년으로 해 보시지, 그래야…… 3년에?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3년에 2722억 원 해서 연평균 207억 원쯤 됩니다.

○**유기홍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답변하시는 과장님, 직책·성명을 말씀하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속기록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4항에 있는 건데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한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런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한 법이 실제 현재와 대법원 사이에서 약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법을 믿고 소송을 한 사람들이 패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고친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 당시 법을 제정할 때에 원래 소청을 내 가지고 임용결정을 받으면 당연히 복직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었습니다. 마는 그게 위헌요소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삭제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에서 '임용결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임용의 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숙 의원님께서 이번에 다시 복직을 허용하는 법을 내신 거거든요.

○**委員長 權哲賢** 그런 거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委員長 權哲賢**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제정 당시부터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뺀 부분인데 다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하여튼 대법원에서는 법 제정 당시에 법 제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기각을 시키고 한 것 같은데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유기홍 위원** 한 200명?

○**委員長 權哲賢** 한 해 한 500명 정도 되지요?

○**유기홍 위원** 지금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200명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도 소송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때 공청회에서도 양론이 있었는데요. 양쪽 다 법조인들이 와서 한쪽은 괜찮다고 그리고 한쪽은 뭐……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했는데 해당 대학에서 원상회복을 안 시키고 계속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委員長 權哲賢**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은 4월 18일에 개최되는 공청회를 거친 후에, 그리고 기타 법안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철현	김교홍	김영숙	김영춘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	이군현
이원복	이은영	이주호	임해규
정문헌	정봉주	최순영	최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구기성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차관	이종서
정책보좌관	유장수
대학혁신추진단장	곽창신
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학교정책실장	유영국
학교정책국장	김홍섭
지방교육지원국장	우형식
특수교육정책과장	이석진
평생학습국장	김정기
대학지원국장	황인철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병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영어교육진흥 특별법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7. 3. 8 신학용·김애실·이승희·차명진·이계경·김혁규·김영주·김현미·이원영·박병석·신상진·서재관·한광원·김교홍·황우여·박상돈·안영근·심재덕·김태년 의원 발의)

3월 12일 회부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7. 3. 16 박찬숙·김정훈·이성권·이경재·배일도·신상진·이성구·김명주·정문헌·김애실·이해봉·안명옥·엄호성·안상수·제종길 의원 발의)

3월 20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2007. 3. 26 최순영·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배일도·심상정·안상수·이영순·임종인·천영세·현애자 의원 발의)

3월 26일 회부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7. 3. 30 이경숙·최순영·이은영·정성호·정봉주·김교홍·이미경·안민석·최재성·민병두·강혜숙·김영춘·유기홍·김선미·이상민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 3. 30 안명옥·정문헌·유기준·배일도·이명규·문희상·정병국·최인기·이계경·신상진·곽성문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 3. 30 안명옥·정문헌·유기준·배일도·이명규·문희상·정병국·최인기·이계경·신상진·곽성문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3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7. 4. 4 이경숙·이은영·김영주·최순영·김효석·안민석·최규성·정봉주·이미경·민병두·유기홍·이인영·홍미영·김현미·김교홍·이상경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2007. 4. 4 이재웅·박찬숙·선병렬·박형준·김병호·장운석·김정권·정종복·이상배·이명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5일 회부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07. 4. 9 임해규·김정권·김영숙·신상진·안홍준·김기춘·서병수·권경석·이주호·권철현·이강두 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7. 4. 9 민병두·선병렬·정봉주·노현송·노웅래·이경숙·이목희·이은영·최재성·김태년·이인영 의원 발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2007. 4. 11 김영숙 · 이재오 · 김교홍 · 이미경 · 정봉주 · 최순영 · 강기갑 · 현애자 · 서갑원 · 심상정 · 안홍준 · 임인배 · 임해규 · 김애실 · 안명옥 · 김성조 · 진수희 · 박찬숙 · 권경석 · 정종복 · 안경률 · 김양수 · 허천 · 황진하 · 배일도 · 김명주 · 천영세 · 권영길 · 민병두 · 유기홍 · 이군현 · 이영순 · 안민석 · 이원복 · 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7. 3. 8 고경화 · 고조홍 · 김애실 · 김태년 · 나경원 · 박명광 · 박상돈 · 박재완 · 배일도 · 송영선 · 신상진 · 안명옥 · 안상수 · 엄호성 · 오제세 · 유재건 · 이인기 · 장복심 · 장운석 · 정병국 · 정화원 · 진수희 · 차명진 · 황우여 의원 발의)

3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07. 3. 23 백원우 · 송영길 · 김현미 · 장복심 · 유기홍 · 우상호 · 이광철 · 이화영 · 양승조 · 강기정 · 안민석 · 윤호중 · 김선미 · 장향숙 · 한병도 · 유승희 · 홍미영 · 오영식 · 이기우 · 김영춘 · 이경숙 · 노현송 · 이계경 · 이은영 의원 발의)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2007. 3. 26 이경재 · 신명 · 김형주 · 신상진 · 김송자 · 신중식 · 정두언 · 박순자 · 김덕규 · 맹형규 · 장복심 · 배일도 · 문희 · 이윤성 · 박찬숙 · 단병호 · 박형준 · 이원복 · 심재엽 · 안홍준 · 조정식 · 김영주 · 정문헌 · 김석준 · 광성문 · 김성조 · 고흥길 · 정진섭 · 이인기 · 안상수 · 김애실 의원 발의)

3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7. 4. 4 이경숙 · 김재윤 · 이은영 · 최규

성 · 정봉주 · 이미경 · 민병두 · 이계경 · 김효석 · 안민석 · 문학진 의원 발의)

4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